

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- 26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17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, 『방송법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계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 할 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- 방송법 제108조 등

2. 계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기타 관련사항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국세징수법 등 참조

4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(또는 5%)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(단위:원)

연번	세목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과태료	0178190004530002758	(주)세븐인터내셔널	206-81-839** 110111-28413**	5,000,000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, ***호(마포동, ***빌딩)
2	과태료	0178190004530002382	오진수 (렉스텔레콤)	820726-***** 106-08-551**	5,000,000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, *층 ***호 (한강로3가, 아이파크몰)
3	과태료	0178170004530000499	주식회사 광고와사람들	301-81-834** 150111-00890**	120,000,000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7, (사창동 237-9)
4	과태료	0178140004530000230	케이시엔티브이(주)	110111-23588**	5,000,000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, 201-140* (춘의동, 춘의테크노파크2차)
5	과태료	0178140004530000227	(주)실버방송	109-81-774** 110111-24917**	17,50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, 100*호(양정동)
6	과태료	0178170004530000068	주식회사 오씨비	107-87-265** 110111-41939**	12,50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79길 14-5, **빌딩 *층(역삼동 724-36) 경기도 김포시 운양로97번길 6* (운양동)